
- 2019년 사업소 재무감사 -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삼 척 시
[기획감사실]

2019년 사업소 재무감사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연번	소 관	시행 년도	제 목	행정상 조 치	비고
계			17건	주의 8 시정 9	
1	○○○○○○○	2018	<u>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u>	주의	
2	○○○○○○○	2018~ 2019	<u>용역대가 지급 부적정</u>	주의	
3	○○○○○○○	2018~ 2019	<u>준공정산 부적정</u>	시정	
4	○○○○○○○	2018	<u>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u>	시정	
5	○○○○○○○	2019	<u>출장여비 집행 부적정</u>	시정	
6	○○○○○○○	2019	<u>산재보험료 과다 산정</u>	주의	
7	○○○○○○○	2017~ 2019	<u>준공정산 부적정</u>	시정	
8	◇◇◇◇◇◇◇	2017~ 2019	<u>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부적정</u>	주의	
9	◇◇◇◇◇◇◇	2019	<u>계약심사 미이행</u>	주의	
10	◇◇◇◇◇◇◇	2019	<u>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u>	주의	
11	◇◇◇◇◇◇◇	2019	<u>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u>	주의	
12	◇◇◇◇◇◇◇	2019	<u>준공정산 부적정</u>	시정	
13	□□□□□□□□□	2019	<u>건설공사 설계서작성 부적정</u>	주의	
14	□□□□□□□□□	2018	<u>준공정산 부적정</u>	시정	
15	□□□□□□□□□	2018	<u>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u>	시정	
16	□□□□□□□□□	2018~ 2019	<u>공용차량 정비대장 미작성</u>	시정	
17	□□□□□□□□□	2018~ 2019	<u>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u>	시정	

【일련번호 : 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집행일자	예산과목	집행내용	집행금액(원)	비고
계	4건		*,* * * * *	
20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원회식	***,***	
20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원회식	***,***	참석자 명단누락 (50만원 이상)
20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원회식	***,***	
2018.**.**	부서운영업무추진비	***** 직원회식	***,***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 업무추진비 항목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 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직원 회식’ 4건의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접대성경비 수혜자인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용역대가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집행내용	계약자	계약금액	선납 지급금액	비고
계	7건		**,***	**,***	
2018.**.**	*****(***) ****용역	(주)***** *****	**,***	**,***	
2018.**.**	*****(***) ****용역	(주)***** *****	**,***	*,***	약8.4% 할인청구
2018.**.**	*****(***) ****용역	(주)***** *****	**,***	**,***	
2018.**.**	*****(***) ****용역	(주)*** **	**,***	**,***	5% 할인청구
2019.**.**	*****(***) ****용역	(주)*** **	**,***	**,***	5% 할인청구
2019.**.**	*****(***) ****용역	(주)***** *****	**,***	**,***	약8.4% 할인청구
2019.**.**	*****(***) ****용역	(주)***** *****	**,***	*,***	

2. 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등 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계약을 적절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감독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지방회계법」 제35조에 따라 그 성질상 선금으로 또는 개괄산정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금급이나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 전에 미리 그 대금의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나,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선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선납에 대한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공공기관의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납부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선납 또는 일괄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에서는 용역계약 체결 이후 과업지시서에 따른 계약 이행여부를 감독하여야 하며, 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를 실시 한 후에 대가를 지급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용역' 7건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제공에 대한 검사를 하지도 않고, 최소 한의 채권을 확보하지도 않은 채 선납 시 5~8% 할인청구를 이유로 연초에 계약금액(청구금액)의 전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감독·검사 등 계약내용 이행을 확인 후 대가를 지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 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계상 금액	사용 금액	미정산 금액	비고
계	5건		***,***		*,***	***	***	
2018.***	*** *** *** **** 개량공사	(주)*** *****	* ,***	건강 연금	***	-	***	증빙내역 없음
2018.***	*** ****(**) **개발공사	(주)*** *****	** ,***	건설기계, 환경관리비	***	**	**	증빙금액 부족
2018.***	*** *** *** **** 개량공사	(주)***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증빙금액 부족
2018.***	*** **** * ***** 개량공사	(주)*** *****	**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	**	증빙금액 부족
2019.***	*** ***** *** 및 *** 설치공사	(주)***	** ,***	폐기물 처리비	**	-	**	증빙내역 없음

2.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면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3조 및 제8조에 의하면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며,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에 위반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 개량공사’ 등 2건의 4천만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도급내역에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안전관리 상 필요에 의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였을 경우 사용기준에 맞게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미사용분에 대해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였고, ‘◆◆◆ ■ ■ ■ ▽▽▽▽▽▽▽▽ 개량공사’ 등 3건의 공사는 도급내역에 명시된 폐기물 처리비, 환경관리비, 보험료 등의 납부내역,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거나 사용금액이 계상금액보다 부족함에도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보험료 등 총 ***,**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 요	채 주	통계목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계	5건						부족소화 ***
2018.**.**	공용차량 수선(교환) ****	***** ****	201-01	*,***	-	**	** (미소화)
2018.**.**	◎◎◎◎◎◎ **** **에 따른 서고정리용역	****	201-01	*,***	-	**	** (미소화)
2018.**.**	사무실 소모품 구입	****	201-01	*,***	-	**	** (미소화)
2018.**.**	*** ****(**) ***** 관급자재	*****	401-01	*,***	*	**	** (부족소화)
2018.**.**	***** ***** 홍보전단지 제작	****	201-01	*,***	-	**	** (미소화)

2.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공용차량 수선’ 등 5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환수 **,***원

【제 목】 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관내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출장목적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시간	공용차량	차량명(임차)	지급액	초과지급액
계	3건						**,***	**,***
1	*****.** 현지확인차	***	2019.**.** **:00~**:00	4시간 이상	사용	**	**,000	**,000
2	***,*** ***** ***** 감독차	***	2019.**.** **:00~**:00	4시간 이상	사용	**	**,000	**,000
3	***** (***,***) 감독차	***	2019.**.** **:00~**:00	4시간 이상	사용	**	**,000	**,000

2. 내용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출장공무원) 및 「삼척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은 당해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여야 하고 사사로운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무원은 여비 · 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에는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르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차량운행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하고, 차량운행자는 관내출장 신청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사용으로 선택해서 신청하여야 하며,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 지급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여 출장비 감액 등 지급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여비를 지급하면서 공용차량을 사용하여 출장을 실시하였음에도 관내출장 명령 시 공용차량 사용여부를 미사용으로 신청하여 출장여비 지급 시 1만원을 감액하지 않아 출장비를 정당액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초과 지급된 출장여비 **,***원을 환수 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산재보험료 과다 산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산재보험료 과다 산정 현황

연번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업체	도급액 (천원)	사업 종류	산재보험료(내역서)		적정 요율
						계상금액 (원)	적용 요율	
계				**,***				
1	2019.**.**	***** * * * 및 **** * * * 교체공사	******(주)	**,***	건설업	**,***	3.90%	3.75%
2	2019.**.**	***** * * * * * *** * * * * * 교체공사	******(주)	**,***	건설업	***,***	4.05%	3.75%
3	2019.**.**	***** * * * * * *** * * * * * 교체공사	******(주)	*,***	건설업	**,***	4.03%	3.75%

2.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¹⁾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개정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90호)에 의하면, 건설업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3.6%에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0.15%를 더하여 3.75%로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및 **** *** 교체공사’ 등 3건의 건설공사를 계약하면서 설계내역서(견적서 포함)에 산재보험료가 3.90%~4.05%로 과다 반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계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잘못된 요율을 적용한 그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1) 총공사금액(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 2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적용 제외 사업이었으나 2017.12.26. 삭제됨
(적용 제외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함)

【처분요구】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 설계내역서에 적정 요율의 산재보험료를 반영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7】 신분상 조치 *명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연도	계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산재보험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건	금액 (천원)
2017~ 2019년	8	*,**	1	**	3	*,**	3	***	1	**

2.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신이 시공하는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받을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을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에 의하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소요비용 지출내역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조성구간 ♣♣♣♣♣ 이 설공사’ 등 8건의 건설공사에 대해 도급내역에 명시된 폐기물처리비, 환경관리비, 보험료,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등의 지출 및 처리내역, 보험가입

증명원,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정산처리 후 공사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나, 증빙서류 제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폐기물처리비, 보험료 등 총 *,**,***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8】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7 ~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출일자	집행내용	통계목	지출금액	지급처	비고
계		7건		* , ***		
1	2017.**.**	*** * * * * *** 구입	201-01	***		
2	2018.**.**	** 및 ** * * *** 구입	201-01	***		
3	2018.**.**	** 및 ** * * *** 구입	201-01	***		
4	2018.**.**	**** ***** 선진지 견학에 따른 인솔자 ** * * *** 구입	201-01	**	*** (소속직원)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및 개인계좌 입금
5	2018.**.**	**, ** ** *** 구입	201-01	***		
6	2018.**.**	**, ** ** *** 구입	201-01	***		
7	2019.**.**	**, ** ** *** 구입	201-01	***		

2. 내용

「지방회계법」 제33조에 따르면 지출원은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으며,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권자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시에는 집행품의 금액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비목별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후 이용 대금을 입금하는 행위와 개인카드를 업무용으로 사용한 후 자치단체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 사용경위 소명 후 즉시 적합한 카드로 변경 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업무수행 목적으로 관외출장 중 ◆◆◆◆ 추진 기본 자료로 활용하고자 **** * * **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을 구입하여야 함에도 ****업무 담당자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 등 * * ***을 결제한 후 집행품의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출하여 세출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개인카드를 업무상으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고,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9】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계약심사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계약심사 미이행 현황

건명	시행일자	발주금액 (천원)	계약구분	비고
** *** ***(* * * *) 구입	'19.**.*.	21,780	물품	심사대상
*** **** ***** 구입	'19.**.*.	20,000	물품	"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1.-나.-2)” 및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²⁾ 2천만원 이상의 사업은 계약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 따라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

그런데, ◇◇◇◇◇에서 추진한 “** *** ***(* * *) 구입” 외 1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절 “1.-나.-2)” 및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물품의 제조·구매의 경우에는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사업 범위에 해당되므로 계약심사 대상 사업으로 계약심사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사업부서에서 자체 원가심사 후 사업을 추진하는 등 계약심사 이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계약심사 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 전 계약심사 절차 이행 후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0】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소득세 원천징수 부적정 현황

연도	계	파소징수	미징수	비고
2019년	17건	16건	1건	

2. 내용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에 의하면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84조 및 시행령 제87조에 의하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2018.4.1.부터는 100분의 70, 2019.1.1.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여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을 원천징수³⁾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구분	기준	18년 4월~	19년 이후	비고
지급액	25만원	16만 6,666원	12만 5,000원	
필요경비 공제율	80%	70%	60%	
소득세+지방소득세	4.4%	6.6%	8.8%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한편, 본청 회계과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실과소 및 읍면동에 문서⁴⁾를 시행하여 업무에 참고하도록 안내한 바 있다.

따라서, ◇◇◇◇◇◇에서는 □□□나 ○○○○○ 등 기타수당 지급 시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 조정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규정에 맞게 원천징수를 실시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제**기 ◀◀◀ ▶▶▶▶ 및 ▨▨▨▨▨' 운영에 따른 16건의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지급금액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3)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율 : [지급액 - (지급액 × 60/100)] × 20/100 ⇒ 지급액의 8.8%(소득세+지방소득세)
⇒ 과세최저한 : 12만 5,000원

4) 회계과-7758(2018.4.2.) 「기타소득세율 변경사항 안내」

를 합하여 8.8%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규정과 다르게 3.52%의 금액만 원천징수하여 과소 징수하였으며, ‘[REDACTED] 지급’ 1건은 기타소득과세최저한 변경으로 2019년부터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됨에도 관련 규정을 파악하지 못해 기준에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천징수를 실시하지 않아 소득세 징수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향후, 강사료 지급 시 「소득세법」 등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 원천징수 의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1】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내역

집행일자	지출과목	집행내용	집행 계상인원	지출금액(원)	적정집행 예산과목	비고
2019.**.**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 직원 격려품 구입	**,***원 ×25명	***,***	기관(부서) 운영업무추진비	내부직원, 명단누락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에 따르면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 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고 하고 있으며,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 집행할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해설집에 따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사업부서에서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이므로 단순히 자치단체 내부공무원에게만 집행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직원 격려품 구입’을 집행하면서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임에도 주된 상대방 명단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소속부서 직원의 ◆◆ 격려품 구입을 사업목적의 경비인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기준과 다르게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각종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2】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계상 금액	사용 금액	미정산 금액	비고
2019.**.**	**** * **** 개선공사	주식회사 ****	**,***	산재. 고용보험	***	-	***	가입증명원 없음

2.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개별법령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 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 개선 공사’ 1건의 준 공금을 지출하면서 도급내역에 명시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을 제출받아 해당보험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계약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정산한 산재·고용보험료 ***,**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3】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9년

【행정상 조치】 주의

【재정상 조치】 -

【제 목】 건설공사 설계서작성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건설공사 현황

공사명	시행일자	설계금액 (천원)	비고
**** * *** *** 도장공사	2019. *. **.	**,***	
*** ** 화장실 설치공사	2019. *. **.	**,***	
*** **** 교체 및 *** * 보수공사	2019. *. *.	**,***	

2. 내용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조 제4호 내지 제9호에 따르면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사용 재료의 수량·단가를 타당하게 적용하여 경제적이고 최적의 공사설계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 2019년 추진한 “**□□□□ ○●○●** *** 도장공사” 외 2건의 사업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여 공사 시공을 위한 계약상대자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업무 후임자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설계도면이 생략되었으며,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 자료 없이 공정별 목적물 물량을 적용하여 불명확하게 물량내역서를 작성하는 등 건설공사 설계서 작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건설공사 추진 시,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라 현장을 확인 후 설계서를 작성하고 내역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라며,
-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연찬을 통해 건설공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4】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감액 ***,***원

【제 목】 준공정산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준공정산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지출일자	계약명	도급사	도급액 (천원)	정산 구분	계상 금액	사용 금액	미정산 금액	비고
계	3건		**,***		***	-	***	
2018.**.**	***** **** 식재공사	(주)*****	**,***	환경 관리비	**	-	**	증빙내역 없음
2018.**.**	*** **** ** *** 식재공사	(주)*****	**,***	환경 관리비	**	-	**	증빙내역 없음
2018.**.**	***** 주차장 도색공사	*****	*,***	산재, 고용보험	**	-	***	가입증명원 없음

2.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66조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에 의하면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으로 비용의 세부산출기준은 [별표 8]에 세부 산출기준이 제시되어 있고,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개별법령에 따른 고용 및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하면, 발주자는 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에 반영하고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 ◎◎◎◎ 식재공사' 등 2건의 공사에 대해 도급내역에 명시된 환경관리비의 사용내역, 세금계산서

- ◆ 주차장 도색공사' 1건의 공사는 도급내역에 명시된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해당 공사명으로 가입한 가입증명원을 제출받아 해당보험료의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아니하고 정산 없이 대가를 그대로 지급하여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미정산한 환경관리비, 산재·고용보험료 등 총 ***원에 대하여 감액조치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각별한 주의를 촉구합니다.

【일련번호 : 15】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지역개발채권 소화 부적정

【위법·부당내용】

1. 현황

(단위 : 천원)

지급일자	적요	채주	통계목	지급액	소화 채권액	정당 채권액	차액
2018.**.**	*** *** **** 구입	(주)****	201-01	*,**	-	**	** (미소화)

2. 내용

「지방공기업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와 건설공사 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시·도의 조례에 의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 의 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액 1,000천 원 이상의 공사도급 및 용역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

구액의 2.5/100, 물품구매, 수리·제조 계약에 대하여는 대금청구액의 1.5/100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되, 매출액 산출결과 1건당 5,000원 미만의 단수는 버리고 5,000원 단위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 제4항 [별표 2] 면제대상에 따르면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의 신용카드로 대금을 지불하는 경우 매입의무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 ▽▽▽ ★★★★
★ 구입’ 1건을 집행하면서 지역개발채권 **천원을 미소화하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처분요구】

-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미소화된 지역개발채권 **, ***원을 소화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6】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

【제 목】 공용차량 정비대장 미작성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공용차량 정비대장 미작성 현황

정비일자	정비내역	건수	지출금액	차량번호	비고
2018 ~ 2019년	**** 교환 등	12건	6,548,000원	***** 등 3대	

2. 내용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차량총괄기관의 장 및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산행정시스템에 따라 기록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차량정수관리대장, 차량배차신청(승인)서, 차량유류수불대장, 차량

운행일지, 차량정비대장,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 등의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에서는 위 현황과 같이 12건 총 6,548천원의 예산을 집행하여 공용차량을 정비하면서 새올행정시스템 차량정비대장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 따라 전산행정시스템(새올)에 공용차량 정비내역을 기록하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차량관리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련번호 : 17】 신분상 조치 없음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

【기관·부서명】 □□□□□□□□

【시행년도】 2018 ~ 2019년

【행정상 조치】 시정

【재정상 조치】 추징 ***,***원

【제 목】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위법·부당내용】

1. 현황

○ 법인신용카드 적립포인트 현황

기준일	카드번호	적립 포인트	비고
2019.**.**.	****-****-****-****	***,***	공공유류카드

2. 내용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IV장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 요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자치단체에 연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서는 연 1회 이상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 적

립 포인트 내역을 확인하여 해당 카드사에 적립포인트 지급 요청을 하고 환급금액에 대하여 시 세입조치를 했어야 했다.

그런데, □□□□□□□□□에서는 2017년 10월 이후 감사일 현재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 포인트에 대해서 세입조치를 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2018년 9월 해당 카드사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지급 신청을 하여 **,**원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로 지급받았으나 감사일 현재까지 세입조치 없이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에 적립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처 분 요 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립된 법인신용카드 포인트 **,**원에 대하여 세입조치하시고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 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계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